

교외체험학습 세부 시행 계획

I. 관련 법령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1. 17.)

가. 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체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별표8] 2조 라목 7)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II. 체험학습 기본 방침(현장체험학습 제외)

1. 체험학습 대상 및 종류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등학교는 동일계열, 학과에 맞추어 시행한다.

나.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2. 체험학습 운영 학칙 제정

가. 법률에 근거하여 세부 시행 방침 등을 학교의 실정과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그리고 학교장의 교육적 목적에 따라 학교별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나. 학칙 및 세부 규정은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시행하여 민원 소지를 최소화한다.

다. 체험학습 승인 일수는 학교급·지역·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체험학습 운영 방법

가.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하되,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한다.

※ 결재라인: 담임교사 - 학년부장 - 교감 - 교장

나. 학생이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장과 담임교사, 보호자가 공동으로 학생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다. 학교장 및 담임교사는 체험학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라. 학급 담임교사는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체험학습기간 중의 출석상황을 확인하여 정리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업무관리시스템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비공개 처리), 체험학습 관련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III.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

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가정학습의 경우 [서식2])**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서식 4](가정학습의 경우 [서식5])**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 (1)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2)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서식3] 작성·발급)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출결을 ‘**미인정**’으로 처리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학기 시작 후 3일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

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학생관리 운영 방안

- 가.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확인
- 나.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서식1]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 가정학습은 [서식2] 작성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연번(교사기재) : 2023 - **학년** - 001

체험학습 참가자	학년	반	번	성명	전화	비고

기간	2023년 월 일(요일) ~ 2023년 월 일(요일)(일간)					
시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장소						
인솔보호자	기간	학생과의 관계	성명	전화		
체험학습 주제	<예시> · 국내·외 친지 방문 및 효도 체험학습 ·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학습 등					
학습내용						
확인사항	·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출결이 '미인정'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학 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전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서식2]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가정학습 신청서

연번(교사기재) : 2023 - 학년 - 001

가정학습 신청자	학년	반	번	성명	전화	비고

기간	2023년 월 일(요일) ~ 2023년 월 일(요일)(일간)
장소	※ <u>하교시간까지는 반드시 가정에서 학습(학원 및 독서실 등에서의 학습 금지)</u>
학습 계획	※ 가정학습 기간 동안의 학습계획을 시간대 별로 작성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 활동 시 출결이 '미인정결석' 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전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서식4] :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 가정학습은 [서식5] 작성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누 가

전주제일고등학교	제 ()학년 ()반 ()번	이름 :
----------	-------------------	------

언 제

기 간	2023년 월 일(요일) ~ 2023년 월 일(요일) (일간)
시 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어디에서

교외체험학습 장소	▶
--------------	---

무엇을, 어떻게, 소감(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무엇을	가정의 가게, 돌아가신 분의 일, 만남 친척, 추석 민속놀이, 고향의 자료, 추석 상 차리기, 기타 국내외 각종 체험 등
어떻게	구체적인 체험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록
소 감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학생: (인)

결 재	담 임
--------	--------

전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5] :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가정학습 보고서

1. 누 가

전주제일고등학교	제 ()학년 ()반 ()번	이름 :
----------	-------------------	------

2. 언 제

기 간	2023년 월 일(요일) ~ 2023년 월 일(요일)(일간)
-----	-----------------------------------

3. 어디에서

가정학습 장소	▶
---------	---

4.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결과(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학습 결과 보고	※가정학습 신청서의 가정학습 계획에 따른 학습 결과 작성
-------------	---------------------------------

위와 같이 가정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학생 : (인)

결 재	담 임

전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보고서 제출기간: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